

2022년 세제개편 및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

August 9, 2022

목차

- I. 2022년 세제개편 방향
- II. OECD 필라 1,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동향
- III. 국세청의 2022년 하반기 세무조사방향

I. 2022년 세제개편 방향

□ 정책방향 및 추진일정

2022. 7. 21.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그 **목표**를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과제 및 추진기반**으로 ① ‘경제 활력 제고’, ② ‘민생 안정’, ③ ‘조세인프라 확충’ 및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으나, 현재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서 일부 개편안은 원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2. 7. 21. :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2022. 7. 22. ~ 8. 8. : 입법예고(17일간)
- 2022. 8. 18. : 차관회의
- 2022. 8. 23. : 국무회의
- 2022. 9. 2.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구체적인 세제개편안 내용

이하에서는 정부의 금년도 세제개편안 중 기업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¹

-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였으며,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현행 10, 20, 22, 25%)에서 2~3단계(10, 20, 22%)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일반기업은 과세표준 200억 원까지는 20%, 그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그 초과분은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기업보다 세부담이 완화된 예정입니다.

2.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²

- 현재는 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해 현지 법인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후 해외자회사로부터 국내모회사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시켜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되, 현지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하는 방식에 의해 이중과세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자회사로부터 국내모회사에게 지급된 배당금 자체를 익금불산입의 방법으로 모회사의 소득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되는 해외자회사의 범위를 기존 지분율 25%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3.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고자,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여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합니다.³

- 현재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를 구분하고,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여, 각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이 보다 단순화되었습니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불문하고) 최소 8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80%가 아닌 30%의 익금불산입률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다소 불리해진 측면이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 예정입니다.

¹ 법인세법 제55조

² 법인세법 제15조, 제21조, 제41조, 제57조, 제57조의2 개정, 제18조의4 신설

³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4.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⁴

- 현재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의 경우 100%)를 한도로 공제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80%로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022년말로 일몰 종료됩니다.⁵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란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를 과세하던 규제성 조세제도인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를 2022년말 일몰 종료 예정입니다.

6.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⁶

-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기존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100%에서 90% 이상으로 변경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 예정입니다.

7.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⁷

- 기존 5개의 고용지원 제도(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정규직전환·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현실화하고, 정규직 전환자 등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 예정입니다.

8.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⁸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기간이 현재는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이었는데, 이 제한을 폐지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9.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⁹

-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인 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일반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3%, 5%에서 5%, 6%(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50% 수준)로 확대 예정입니다.

⁴ 법인세법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제91조

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⁶ 법인세법 제2조, 제76조의8

⁷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신설

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8조

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0. 스톡옵션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¹⁰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누적한도 5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 분할납부제도를,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 예정입니다.

11.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가 확대됩니다.¹¹

- 현재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2년말까지였으나,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까지로 3년 연장 예정입니다.

12. 금융투자소득 등 관련 세제가 완화 또는 유예됩니다.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완화됩니다.¹²

- 신규자금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유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하여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현재는 친족 등을 포함하여 합산하던 것을 본인만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2)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¹³

-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을 기존 0.23%에서 0.2%로 인하하였으며, 2025년에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2년 유예됩니다.¹⁴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의 시행시기가,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 예정입니다.

(4)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됩니다.¹⁵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율 20%로 과세하는 제도의 시행시기가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 예정입니다.

¹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¹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17조 제2항

¹² 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 제115조, 제118조의9,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8, 제168조, 제169조, 제178조의8, 제225조의2 등

¹³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¹⁴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동법 부칙 등

¹⁵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동법 부칙, 법인세법 부칙 등

1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¹⁶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국가의 대부분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할 예정입니다.

14.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¹⁷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기업의 공장·본사 이전시 감면혜택이 대폭 확대 예정입니다.

15.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됩니다.¹⁸

→ 구체적인 내용은 「OECD 필라 1, 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동향」 중 ‘필라 2의 구체적인 내용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동향’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¹⁶ 소득세법 제119조의3, 법인세법 제93조의3 신설

¹⁷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 제60조, 제61조

¹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0조 내지 제74조, 제78조 내지 제81조, 제84조

II. OECD 필라 1, 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동향

□ 배경

다국적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득 발생지국 등에 사업의 기능, 자산 및 위험을 최소한으로 존치시킨 후 중요기능과 자산 및 위험들은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회사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글로벌 실효 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13년에 OECD 회원국들과 G20국가들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BEPS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OECD 국제적 과세기준의 가장 핵심적 기준인 현행 고정사업장 과세기준과 이전가격 과세지침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인식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들을 모아 ‘새로운 과세권 배분 기준을 수립하는 통합안’(이하 ‘필라 1’)과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규정하는 방안’(이하 ‘필라 2’)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필라 1의 구체적인 내용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동향

1. 필라 1의 구체적인 내용

필라 1의 핵심 구성요소를 “Amount A”, “Amount B”로 구분하였는데, “Amount A”란,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시장 기여분으로 보아 이 금액에 대한 과세권은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시장소재국에 배분합니다.

“Amount B”란,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의 정상이익률을 의미하며 업종별, 국가별, 지역별로 합의된 고정이익률을 해당 자회사나 고정사업장의 정상이익률로 보아 보상합니다.

2. 필라 1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동향

필라 2와 달리 이번 2022. 7. 21.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필라 1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필라 1의 시행이 IF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며,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 7. 12. 보도자료를 통해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필라 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2022. 7. 11. 공개하고, 이에 대해 8. 19.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리고 “IF의 디지털세 필라 1 진행상황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IF가 2022. 7. 11. 공개한 필라 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는 그 동안의 논의성과를 담은 필라 1 모델규정 초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필라 2의 구체적인 내용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동향

1. 필라 2의 구체적인 내용

2021년 10월 최종합의한 디지털세 필라 2의 핵심 내용은, 국제적인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할 목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소득산입규칙, ② 비용공제 부인규칙 및 ③ 원천지국 과세규칙을 IF 회원국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F는 2021. 12. 20. 필라 2에 관한 모델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원칙 중 ① 소득산입규칙과 ② 비용공제 부인규칙을 각국이 국내 세법 체계 내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2. 필라 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동향

2021년 12월에 IF가 일괄 발표한 필라 2 모델규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는 이를 국내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2022. 7. 21.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필라 2 내용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한화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이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는 제외됩니다. 국내 구성기업은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대상조세, 국가별 실효세율, 국가별 추가세액,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으며, 추가세액의 과세 방식으로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내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15개월 내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국외 구성기업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출의무를 면제받으며, 대신 해당 사항을 15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의무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규정들은 모두 그 적용시기를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III. 국세청의 2022년 하반기 세무조사방향

2022. 7. 22. 김창기 국세청장의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개최되어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이 제시되었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에게 희망 조사시기(1~3순위)를 신청 받아 조사시기를 결정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하여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정기조사의 비중을 전년 대비 상향하여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되, 이는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진정한 청문기회를 보장하고 조사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고지하는 실질적 절차 준수를 의미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한 세무조사」

한편으로,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이전, 기업 자금 사유화 등 탈세를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하였으며,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적법과세·적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에 대응하여 민생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팬데믹 호황(인테리어 업체, 홈 트레이닝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인 자산의 사유화,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이익 분여, 통행세 이익 제공, 사주일가에 고액급여 지급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익편취를 검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OECD 모델조세조약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법인을 악용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경영권을 변칙 승계하는 법인 및 사주일가의 불법 재산반출·역외소득 은닉을 엄단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시장의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종탈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업자금 유출 및 편법증여, 시장지배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이용자들의 변칙탈세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및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검증 실시

공익법인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이 확인된 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당 적용 및 다주택 중과 회피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위해 주택 양도 시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신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체계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 수집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신고 혐의자,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로서 종합소득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소득 탈루행위를 차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제흙 대표변호사 | T. 02-316-4052 E. jhebaik@shinkim.com |
| •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 | T. 02-316-7269 E. hpak@shinkim.com |
| • 노형철 세무사 | T. 02-316-4483 E. hcrho@shinkim.com |
| • 윤자영 변호사 | T. 02-316-1666 E. jyyoon@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